


 해양수산부  환경부	<b>보 도 자 료</b>	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 일시	2021. 6. 25.(금) 총 9매(본문 3, 참고 5)	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	담 당 자	•과장 구도형, 서기관 이인자, 사무관 김지현, 주무관 김민지 • ☎ (044)200-5240, 6181, 6182, 6184
	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	담 당 자	•과장 유호, 사무관 서혜인 • ☎ (044)200-7220, 7238
보 도 일 시		<b>배포 즉시 보도 가능</b>	

## 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, 펭귄마을에 이어 보호구역 지정

- 제43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(6월 14~24일)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‘인익스프레시블섬’ 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 -
- 우리나라의 남극보호 지평 확대 및 남극활동 여건 신장 기대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와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(이하 남극회의)에서 한국, 중국,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‘인익스프레시블섬\*’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.

\* 보호구역 공식 명칭: Inexpressible Island and Seaview Bay, Ross Sea

※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(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):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 가입국 (54개국)이 참여하는 연례회의

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남극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‘나레브스키 포인트(일명 펭귄마을)’에 이어 ‘인익스프레시블섬’이 두 번째다.

‘인익스프레시블섬’은 펭귄마을에 비해 면적이 3.4배(0.98km<sup>2</sup> : 3.31km<sup>2</sup>) 넓고, 번식하는 펭귄의 둥지수\*도 6.4배(4,800 : 30,000)가 많다. 환경변화

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·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, 최근 관광·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·중국·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.

\* 등지수가 30,000개라는 것은 부모와 새끼(보통 등지당 2개의 알을 낳음)를 포함하면 약 12만 마리의 펭귄이 분포한다는 의미

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, 자연적,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약의 협의당사국들이 남극의 특정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
196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, 미국, 프랑스, 일본 등 16개국은 총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,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생태계 조사, 환경관리 및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다.

참고로, 우리나라가 지정한 ‘펭귄마을’은 현재 환경부와 극지연구소가 협력하여 매년 생태계 관측(모니터링)과 폐기물 수거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, 주요 결과는 협의당사국회의 및 학술지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.

한편, ‘인익스프레스블섬’이 위치한 남극 로스해는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38%, 황제펭귄의 26%가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, 해양수산부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부터 남극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해의 해양 생태계와 아델리펭귄 번식 관측(모니터링) 등 관련 연구\*를 진행하고 있다.

\*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: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및 환경변화 파악, 아델리펭귄 개체군 생태 연구 등 / '17~'21 / 극지연구소 수행



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“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 과학 기지와 아라온호를 발판으로 남극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

왔다.”라며, “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‘인익스프레시블 섬’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등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“올해 5월 말 열린 ‘2021 피포지(P4G\*)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’와 함께 이번 ‘인익스프레시블섬’의 보호구역 지정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여에 의미가 있으며, 향후 공동제안 3국과 협력하여 ‘인익스프레시블섬’의 보호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\* 피포지(P4G,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)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, 전 세계 공공·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소통창구(네트워크)

- 붙임 1. 남극조약 개요 및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
2. 질의/응답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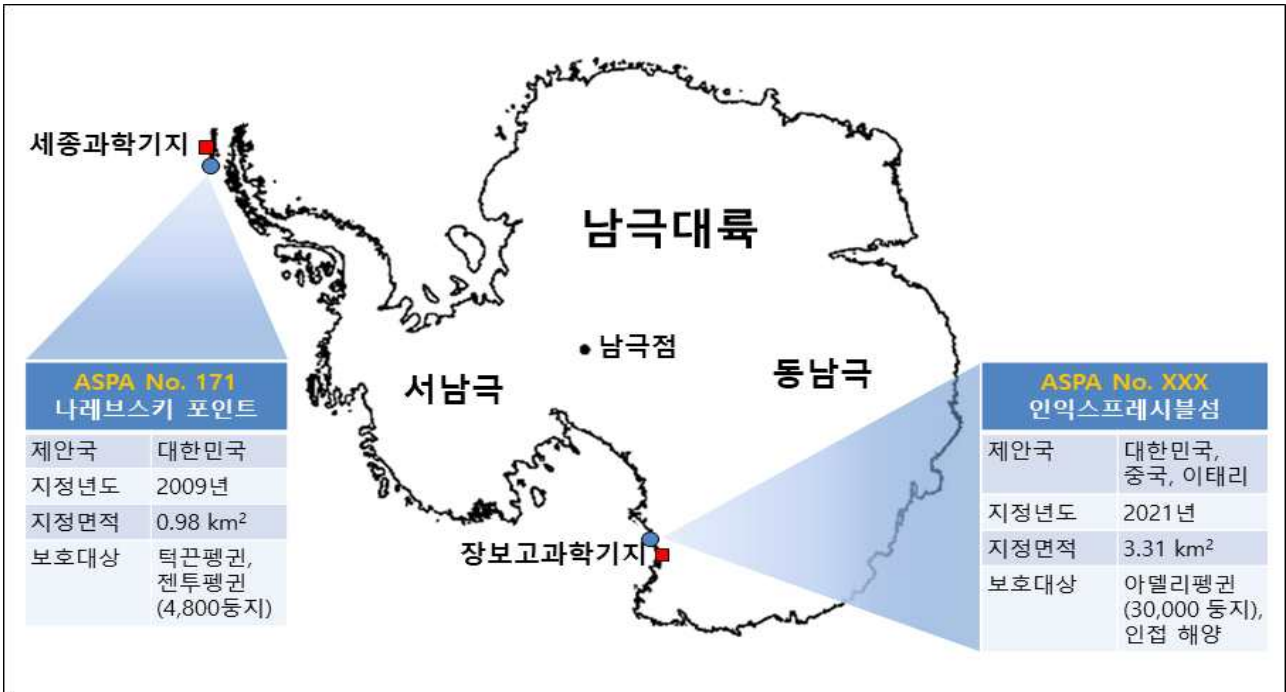
		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,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,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
---	---	--

극지연구소

**남극조약 개요**

- (조약 명칭) 남극조약(the Antarctic Treaty)
  - (목적)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기타 과학적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조화 도모, 영유권 주장 동결
  - 연혁 및 가입국 현황
    - 채택/발효 : '59.12.1/'61.6.23
    - 우리나라 가입/비준 : '86.11.28('86.11.28 발효)
    - '21.6월 현재 가입국 : 54개국
- ▷ 협의당사국(ATCP)\* : 29개국(우리나라는 '89.10월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)
  - ▷ 비협의당사국(non-ATCP) : 25개국(북한 '87.1.21 가입)
- 협의당사국회의의 주요 논의
    -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
    -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원의 감소 뿐 아니라 저장, 처리 및 제거에 관한 활동의 계획·수행
    -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선
  - 국내 관련 법령
    - 「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('04) 및 동법 시행령('05)
      - ※ 「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」 비준('96.10.4)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3개 부처(외교부, 환경부, 해수부) 공동 입법
      - (주요 조항) 제14조(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)를 통해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지정 고시, 출입·활동 허가·승인 등을 법적으로 관리

#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



## 1. 나레브스키 포인트(Narebbski Point)

- (지정일) 2009년 7월 16일
- (위치 및 면적)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바톤반도, 0.98km<sup>2</sup>  
※ 남위 62°13'40" - 62° 14' 23", 서경 58°45'25"- 58°47'00"
- (특징) 젠투펭귄(2,460동지)과 턱끈펭귄(2,416동지)을 포함한 9종의 조류가 번식하고 있으며, 펭귄 군서지 주변에 다양한 식생 분포



젠투펭귄



턱끈펭귄

## 2. 인익스프레시블섬(Inexpressible Island)

○ (지정일) 2021년 6월 24일

○ (위치 및 면적) 동남극 테라노바만, 3.31km<sup>2</sup>

※ 남위 74° 54.2', 동경 143° 43.5'

○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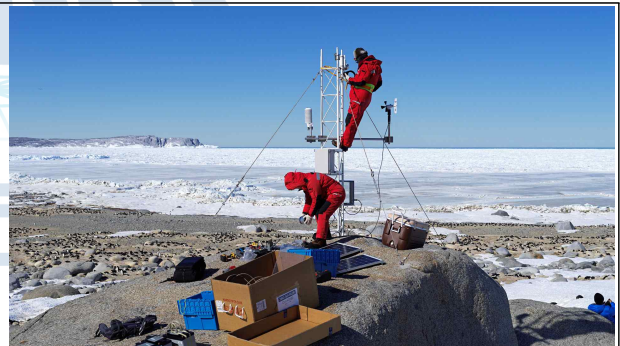
- (지리) 만년빙 말단에 위치하여 대륙풍(katabatic wind)이 세차게 부는 지역으로, 바다가 결빙되지 않는 폴리냐(polynya)가 형성되는 특이 지형. 펭귄과 해표 등 해양동물의 먹이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

- (생태) 7천년 이상 아델리펭귄(29,899동지)의 서식지이며, 남극도독 갈매기 등 다양한 생물 분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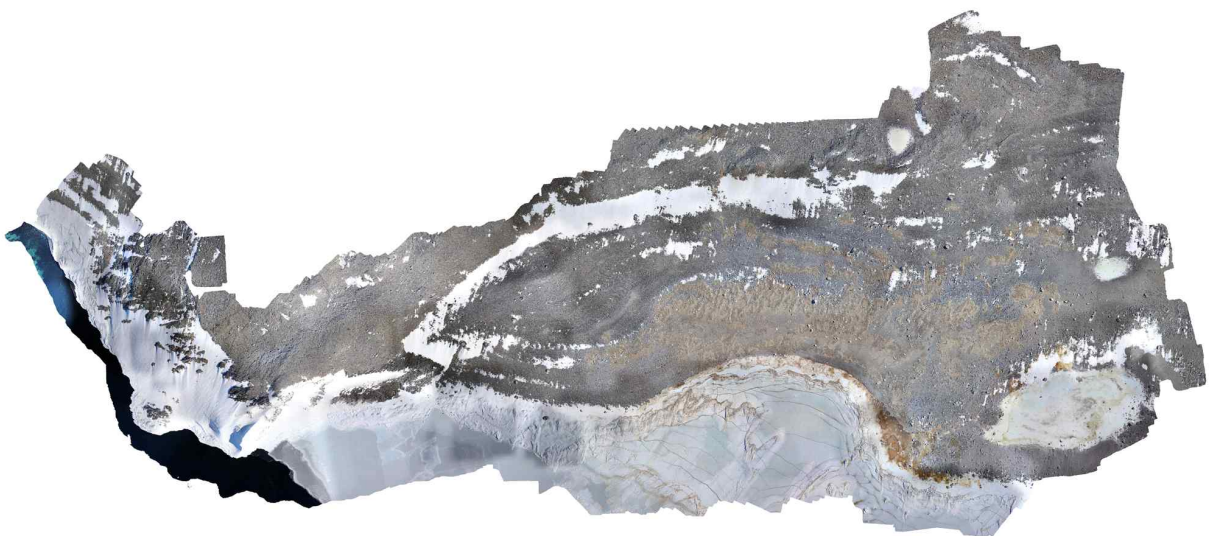
○ (기타) 장보고기지 준공(2014.2) 이래, 36km 남쪽에 위치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의 아델리펭귄 군서지를 매년 모니터링 중



아델리펭귄과 알비노(백색증) 새끼



펭귄군서지의 기상관측탑



드론 항공촬영한 보호구역 내 아델리펭귄 분포현황 (노란색 부분이 펭귄 동지)

**1. '협의당사국', '협의당사국회의'가 무엇인가요?**

남극조약에만 있는 특별한 개념입니다.

**(1) 남극조약 협의당사국(ATCP)(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)**

- 현재 남극조약의 당사국들은 활동실적에 따라 협의당사국\*(한국, 미국 등 29개국)과 비협의당사국(25개국)으로 나뉘며,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할 경우 자격을 취득합니다.

\*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원정대 파견 등과 같은 상당한 연구 활동 실적이 있어야 협의당사국 인정

**(2)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(ATCM)(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)**

- 남극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'당사국총회'라는 용어 대신 '협의당사국회의'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동 회의에는 협의당사국, 비협의당사국 및 옵저버 등이 참여하며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은 협의당사국에게만 주어집니다.

**2.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어떠한 제도인가요?**

특정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
**(1)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의 존재**

- 환경적·과학적·역사적·자연적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있거나 과학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익이 존재해야 합니다.

**(2) 실질적으로 보호·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서의 적절성**

- 경계선, 가능한 관리수단, 기간 등 7개 항목에 걸쳐 해당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관리조치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### 3. '펭귄마을'과 '인익스프레스블섬'은 우리나라 땅인가요?

아닙니다. 남극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.

-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이므로 영토 개념과는 무관합니다.
- 다만, 남극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합니다.

